



인사이트 & 개정사항 업데이트

제 7호: 2023년 3월

mazars



Content

04	2023년도 세법개정사항
09	인사& 급여 업데이트
11	중소기업 회계부담의 합리화 방안 추진
16	주요세율 및 4대 보험

‘인사이트 & 개정사항 업데이트’는 마자르 새빛회계법인에서 발행합니다. 이 발행물은 고객사에게 한국 내 감사 및 세무, 기타 법규에 대한 최신 정보와 개정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자르 새빛회계법인은 ‘인사이트 & 개정사항 업데이트’의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자르 새빛회계법인은 본 정보와 자료의 정확성, 적합성, 신뢰성 또는 완전성을 보증하지 아니하며 그러한 정보와 자료의 오류나 누락에 대한 책임을 명시적으로 부인합니다.

세법 개정사항

2023년 개정세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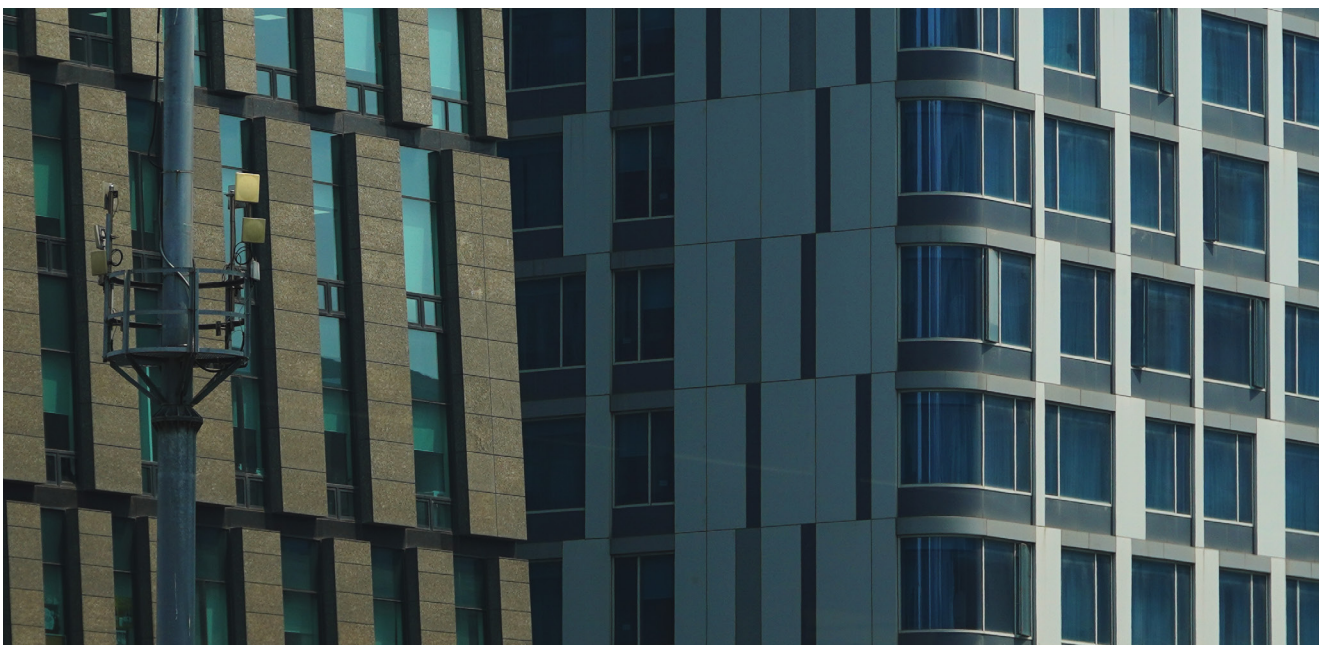
개정 세법은 2022년 12월 23일 국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2022년 9월 정부가 제출했던 개정안과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법인세율 및 소득세 “단일세율” 적용 기간이 있습니다. 2023년 말 국회에서 통과된 세법의 주요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세 세율 조정

법인세 세율이 아래와 같이 조정되었습니다.

과세표준	현행	과세표준	개정
2억원 미만	10%	2억원 미만	9%
2억원 초과 200억원 미만	20%	2억원 초과 200억원 미만	19%
200억원 초과 3,000억원 미만	22%	200억원 초과	21%
3,000억원 초과	25%	3,000억원 초과	24%

*지방소득세 제외



세법 개정사항

2023년 개정세법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도입

해외자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제도를 도입합니다.

- 익금불산입 대상: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 해외자회사 요건: 지분율 10%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 익금불산입 배당소득 범위: 이익의 배당금, 잉여금의 분배금, 의제배당

2023년 1월 1일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해외자회사 요건 완화

적용대상 해외자회사의 요건이 변경됩니다.

- 현행: 지분율 25% 이상,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 개정: 지분율 10% 이상,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2023년 1월 1일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확대됩니다.

- 현행: 일반법인, 연결법인, 합병분할법인, 외국법인: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
- 개정: 일반법인, 연결법인, 합병분할법인, 외국법인: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 중소기업의 경우 소득의 100%로 변경없음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도입

특정국가에서의 조세회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OECD에서 합의된 내용에 따라 당기 개정안에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가 포함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제도의 운용 방식은 여러 국가에 진출해 있는 다국적 기업의 경우,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 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다른 국가에 추가적인 과세권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과세를 위한 좀 더 자세한 내용 및 이행체계 등은 추후에 추가적으로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확대

법인세 중간예납의무가 면제되는 기업의 범위가 직전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에서 5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신설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자료 제출 의무 대상인 제출자료에 현행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자료에 더하여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추가 제출해야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세법 개정사항

2023년 개정세법

국제거래 관련 자료제출 면제요건 신설

국제거래 관련자료의 제출의무 면제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면제범위 추가 내역
 - 1) 국제거래명세서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거래금액 합계 5억원 이하
 - 용역거래금액 합계 1억원 이하
 - 무형자산거래금액합계 1억원이하 추가
 - 2)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 면제요건에 “무형자산거래금액 합계 2억원 이하” 추가
 - 3)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 면제요건에 “무형자산거래금액 합계 10억원 이하”, “무형자산거래금액 합계 2억원 이하” 추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세법 개정사항

2023년 개정세법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간 폐지 (2023년 소득부터 적용)

구분	현행	개정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19%) 특례	국내 근무시작일로부터 5년간 적용	국내 근무시작일로부터 20년간 적용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2023년 국내 최초 근로제공분부터 적용)

Reduction period	현행	개정
외국인 기술자는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과 50% 소득세감면 중 선택가능	5년간 소득세 감면	10년간 소득세 감면

소득세율 조정 (2023년 1월부터 적용)

현행*		개정*	
1,2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10억원 초과	45%

*지방소득세 제외

세법 개정사항

2023년 개정세법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변경 (2024년 1월 소득 지급분부터 적용)

구분	현행	개정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반기별	월 1회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연 1회	월 1회

주거비 부담경감 (2022년 연말정산 적용)

구분	현행	개정
월세세액공제	최대 12%	최대 15%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연 300만원 한도	연 400만원 한도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2023년 1월부터 적용)

현행	개정
월 10만원 이하	월 20만원 이하

연금계좌 세액공제 확대 (2023년 1월부터 적용)

현행	개정
연 700만원 한도 (연금저축: 연 400만원)	연 900만원 한도 (연금저축: 연 600만원)

세법 개정사항 인사& 급여 업데이트

최저임금 5% 인상 (2023년 1월부터 적용)

현행	개정	비고
9,160원	9,620원	1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환산 기준시간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기준의 월 환산액은 2,010,580원

건강보험료율 인상 (2023년 1월부터 적용)

구분	현행	개정
건강보험료율	6.99%	7.09%
노인장기보험료율	12.27%	12.81%

외국인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2023년 1월부터 적용)

현행	개정
1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적용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의무가입, 실업급여 임의가입)



회계감사 업데이트

중소기업 회계부담의 합리화 방안 추진

금융위원회는 회계제도 전반을 재검토하여 중소기업에 대하여 상장대기업과는 다른 회계제도의 적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회계 및 외부감사 관련제도가 상장대기업에 적합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1. 회계기준 적용부담 완화 2. 회계 및 감사 관련 규제 완화 3. 외부감사 부담 경감 및 4. 보완방안을 추진과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회계기준 적용부담 완화

1. 중소 비상장사 연결범위 축소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외부감사법 개정에 따라 2022 사업연도부터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도 모든 종속기업(비외감회사 등)을 포함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또한 개별재무제표에서는 지분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해관계자가 적은 일반 비상장사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에 외부감사법 적용대상인 종속기업만 포함하도록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의 중소 비상장사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비외감 종속기업에 대한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가 2022년에도 면제됩니다. 그 외에 대형 비상장사의 범위와 관련하여 회계기준원의 의견 및 금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 규모의 회사들도 2022년부터 비외감 종속회사에 대한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가 면제되었습니다.

2. 기업과 감사인의 의견교환

- 외부감사법 제6조6항에서는 외부감사인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대리작성하거나 회계처리 자문 등에 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감사 진행시 회사는 감사인으로부터 의견을 받지 못하고 외부컨설팅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경우 재무제표 작성비용 부담이 증가합니다.
- 금융위원회는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감사인과 기업간 의견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용/금지 행위에 대한 실무 사례집을 배포하여 비조치 의견서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3. IPO이후 Re-Fixing 조건 RCPS(전환상환우선주)의 부채적용 완화

- IPO이후 행사가격에 대해 주가에 연계하여 Re-Fixing 조건이 있는 RCPS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우선주주로부터의 납입자본의 법적 형식을 중시하여 자본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RCPS를 상환하는 경우 자본의 감소로 보아 감자차손익이 발생하는 등 IFRS와 다른 회계처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 RCPS 발행자가 의무적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거나 보유자가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면, IFRS에서는 RCPS를 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RCPS의 배당은 이자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또한 Re-Fixing조건이 있는 경우, RCPS 발행회사는 주가 상승시 교부해야 할 주식가치 상승으로 인해 부채비율이 증가하고 당기순이익이 감소합니다.
- Re-Fixing 조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이 IPO를 마친 해당 회사에 관리종목 지정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금융위원회는 IFRS전면도입국의 위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적용을 완화하였습니다:
 - RCPS의 Re-Fixing 평가손익을 주식사향으로 공시
 - 상장규정 상 관리종목 지정에 있어 Re-Fixing 조건부 금융상품 평가손익의 제외 고려
- 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도 가능합니다.

4.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 운영

- 전문인력과 재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를 거래소 내에 설치하고 회계사들의 지원을 받아 운영할 계획입니다.
-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회계기준 질의회신 작성 지원, 재무제표 작성 컨설팅, 감사계약 애로사항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 또한 회계처리 지침과 질의회신 등 실무사례를 통합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되어 운영될 예정입니다.

회계감사 업데이트

중소기업 회계부담의 합리화 방안 추진

회계 및 감사관련 규제 완화

1. 소규모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면제
 - 상장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는 자산총액 규모에 따라 시행시기가 정해져 있으며, 2023년부터는 모든 상장사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 그러나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의 소규모 상장사는 재무제표 감사를 통해서도 오류와 부정의 적발이 가능하며, 감사보수 증가로 인한 부담이 더 가중됩니다.
 -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의 소규모 상장사에 대해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외부감사를 면제하고 기존의 검토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2. 대형비상장사 범위 축소
 -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의 대형비상장사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보호를 목적으로 상장기업에 준하는 회계감사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으로 되어 있어, 이해관계자가 많지 않은 회사들에 대해서도 엄격한 회계감사가 적용되고 있다고 금융위원회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외감법 시행령상 대형 비상장회사 기준을 자산총액 5천억원으로 상향할 계획입니다. 다만,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과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이해관계자가 많은 특성을 감안하여 현행 자산총액 1천억원 기준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3.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면제범위 확대
 - 상장사와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의 비상장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외부감사인의 검토의무가 부과됩니다. (단, 유한회사와 법상 요건에 해당되는 특수목적회사는 제외)
 - 대형비상장사 범위 축소와 함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면제범위도 자산총액 5천억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 역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과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현행기준과 동일하게 1천억원으로 유지됩니다

외부감사 부담 경감

- 현행 국제감사기준은 대형 상장사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영세하고 거래규모가 작은 소규모 기업에는 부적합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도 '덜 복잡한 기업(Less Complex Entities)'을 대상으로 하는 완화된 감사기준 제정을 2024년 시행 목표로 추진중이기도 합니다.
- 금융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소규모 비상장기업에는 국제감사기준보다 한층 간소화된 전용감사기준을 2023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완방안

회계 및 감사관련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보완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1. 공시 내실화

- 현행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공시내용(운영실태 평가보고서)이 형식적으로 작성되고 있어 공시 실효성이 낮고, 내부회계 비적정의건 표명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등의 페널티가 회사의 자체적인 문제 발굴 및 개선 노력을 위축시키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회사의 내부회계 자율개선 유도를 위해 상장유지와 관련된 페널티를 완화하고 개선노력 정도를 감리조치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 결과 경영진과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및 감시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2. 회계부정과 관련한 내부 신고유인 제고

- 회계부정 신고 포상제도를 2006년부터 운영중이나 실제 보상금액이 낮아 제보를 독려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 건별 포상금 규모를 기존의 3배로 증가되도록 산정방식을 개선하며, 건별 포상한도 기준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 증가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회계감사 업데이트

중소기업 회계부담의 합리화 방안 추진

향후계획

금융위원회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은 2022년내에 신속하게 완료하였으며, 입법필요사항은 2023년 2분기까지를 완료목표로 추진중입니다.

1. 회계기준 적용부담 완화

추진과제	조치사항	담당	일정
중소 비상장사 연결범위 축소	K-GAAP 개정	금융위, 기준원	2022년 4분기 완료
기업 감사인간 의견 교환 정상화	사례집 배포 등	금융위	2022년 4분기
상장 시 회계기준 적용 합리화	K-IFRS, 코스닥 상장규정 개정	금융위, 기준원, 거래소	2022년 4분기 완료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 운영	센터 설립	금융위, 거래소 등	2022년 4분기

2. 회계 감사 관련 불합리한 규제 개선

추진과제	조치사항	담당	일정
소규모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면제	법 개정	금융위	2022년 4분기 완료
대형 비상장사 범위 축소	시행령 개정	금융위	2022년 4분기 완료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면제범위 확대	시행령 개정	금융위	2022년 4분기 완료

회계감사 업데이트

중소기업 회계부담의 합리화 방안 추진

3. 외부감사 부담 경감

추진과제	조치사항	담당	일정
소규모 기업 별도 감사기준 제정	감사기준 제정	금융위, 공인회계사회	2023년 1분기
중소기업 감사 실무지원	감사메뉴얼 제공 등	공인회계사회	2023년 1분기

4. 보완 방안

추진과제	조치 사항	담당	일정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내실화	① 내부회계관리제도 공시 강화	외감규정 개정, 시행세칙 개정	금융위, 금감원	2023년 1분기
	② 경영진 내부회계 자율개선 유도	코스닥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	거래소, 금감원	2023년 1분기
회계부정 신고포상금 확대	포상규정 개정	금융위	2023년 1분기	

핵심 지표

주요세율 및 4대 보험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6.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6.5%
5,000만원 이하 8,800만원 초과	26.4%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8.5%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41.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4%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6.2 %
10억원 초과	49.5%

*지방소득세 포함

법인세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 200억원 미만	19%
200억원 초과 3000억원 미만	21%
3000억원 초과	24%

*지방소득세 미포함

4대 보험

4대 보험	사업자 부담비율	근로자 부담비율
건강보험	월 평균보수 X 3.545% X 1.1281	월 평균보수 X 3.545% X 1.1281
국민연금	월 평균보수 X 4.5%	월 평균보수 X 4.5%
고용보험	월 평균보수 X (0.9% + 사업규모에 따른 추가보험료율 [0.25%~0.85%])	월 평균보수 X 0.9%
산재보험	월 평균급여 X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0.7%~18.6%)	
총합	월 평균보수의 약 10%	월 평균보수의 약 9%

위 표에 기재된 사업규모 및 사업종류에 따른 추가보험료율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보험료에는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Contacts

마자르 새빛회계법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90길 11,
용산더프라임 (업무동) 19층
04315

Tel: (+82) 2 3438 2400

Fax: (+82) 2 546 2368

Email: contact@mazars.kr

Seung-ha Park, 박승하

파트너, 대표이사, 세무
seung-ha.park@mazars.kr

Julien Herveau, 줄리앙 에르보

매니징 파트너, 국제 데스크 담당
julien.herveau@mazars.kr

Jung-min Lee, 이정민

파트너, 회계감사 및 재무자문
jung-min.lee@mazars.kr

Gyu-taek Sim, 심규택

파트너, 회계감사 및 재무자문
gyu-taek.sim@mazars.kr

www.mazars.kr

마자르는 감사, 회계, 자문, 세금 및 법률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국제적 통합 파트너십입니다. 전 세계 90개 이상의 국가 및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마자르는 37,000명 이상의 전문가(마자르 통합 파트너십 30,000명, North America Alliance 17,000)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모든 규모의 고객사들의 비즈니스 성장을 지원합니다.

*해당 국가 법률에서 허용되는 경우

www.mazars.com

© Mazars 2023

본 발행물 제작에 참여한 마자리안:

줄리앙 에르보, 박승하, 이정민, 심규택, 심현호, 박동원, 심민규,
김양규, 장유미, 정한움